

## 「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」 Stand-up 맞춤형 지원 모집 공고(하반기)

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「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체계 구축사업」 하반기 Stand-up 맞춤형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7월 3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경상남도지사  
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, 경남테크노파크원장

### 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
- (지원근거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(이하, 지역 중소기업법)」 제26조(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·운영)
- (사업내용)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(Stand-up 맞춤형 지원)
- (운영기관)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지원센터

### 2. 지원내용

- (신청자격) 경상남도 2026년 하반기 Stand-up 맞춤형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
  - 2026년 하반기 Stand-up 맞춤형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(위지원센터)에 문의
- \* 별첨. 2026년 하반기 Stand-up 맞춤형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.

## 신청제외대상

- ◆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- \*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- ◆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- ◆ 휴·폐업 기업
- ◆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| 업종 분류               | 품목코드         | 지원제외 업종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업                 | 33402中       |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33409中       |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| 46102中       | 담배 중개업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6331, 46333 | 주류, 담배 도매업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4722中        | 주류, 담배 소매업            |
|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| 5621         | 주점업                   |
|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    | 5821中        |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9124         | 갬블링 및 베팅업             |

- \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- ◆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-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◆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경우
- ◆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
- ◆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○ (2026년 하반기 지원규모) 50백만원(5개사 내외)

\* 사업비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규모(모집규모, 지원금)가 변경될 수 있음

- (지원금액)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,000만원까지이며 지원분야·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한도 내 구성 가능
- (지원기간) 최대 3개월 지원 가능

### ○ (지원분야 및 내용) 지원한도(기업당 최대 10백만원) 내 지원분야(Tech-UP, Biz-UP)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

-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(업)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(위기진단 및 요건검토)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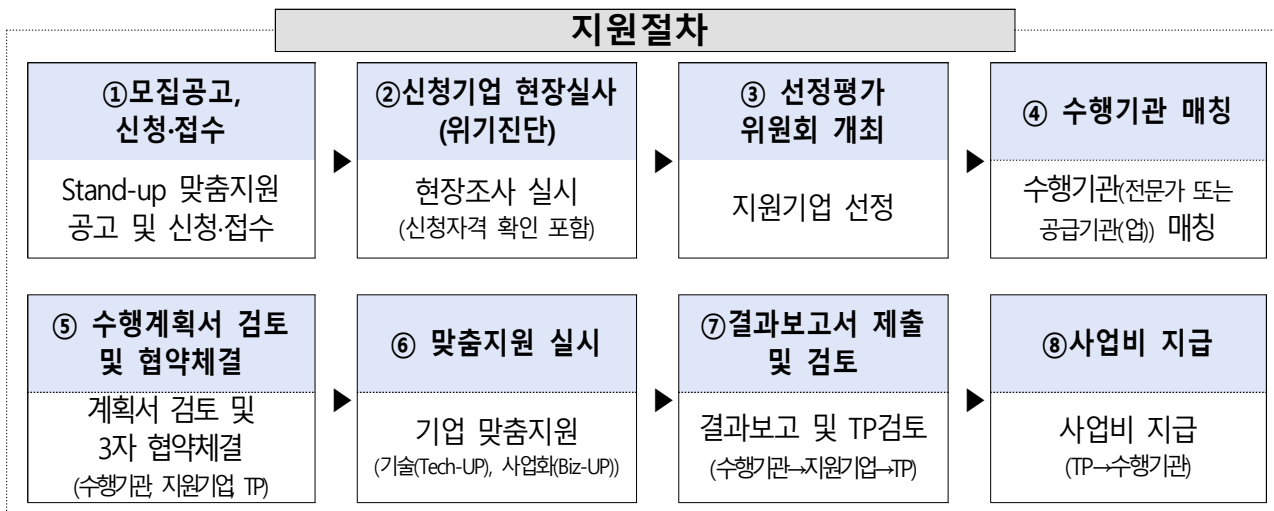
- (사업비 지급)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(업)에게 사업비(부가세 제외)를 직접 지급하며,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

< Stand-up “맞춤지원” 프로그램 >

| 지원분야              | 지원 프로그램               | 세부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액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Tech-UP<br>(기술지원) | 기술정보 분석 지원/<br>기술 멘토링 | -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,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, 기술 멘토링 지원<br>*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~최대 5회까지 지원<br>**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%(최대 2회)까지 인정(증빙자료 제출)          | 최대 2백만원  |
|                   | 국내외 지재산/<br>인증 지원     | -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, 디자인출원,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<br>-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10백만원 |
|                   |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        | -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/신뢰성 평가 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Biz-UP<br>(사업화지원) | 마케팅 지원                | -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,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<br>- 제품 홍보물(제품 브로슈어, 제품 홍보 동영상, 제품 소개자료 등) 제작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10백만원 |
|                   | 디자인 개발                | - 제품 디자인, 포장·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IR자료/투자계약서<br>작성 지원   | -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5백만원  |
|                   | 물류비 지원                | -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(해운·항공) 및 보험료 지원<br>* 제출서류 : 포워딩 인보이스,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(지원기업→물류업체),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(물류업체→지원기업)<br>** 국내운임, 취급수수료, 도착국 발생비용, 세금은 제외 | 최대 5백만원  |
|                   | 경영 개선 컨설팅             | - 경영전략, 인사·세무·재무·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<br>*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~최대 5회까지 지원<br>**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%(최대 2회)까지 인정(증빙자료 제출)                    | 최대 2백만원  |

### 3. 지원절차

- (지원절차) 신청·접수 → 신청기업 현장실사(요건검토 및 위기진단) → 선정평가위원회 → 수행기관(전문가 또는 공급기관) 매칭 → 협약체결 → 긴급처방 지원 →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



### 4. 평가절차 및 기준

- (평가절차) 현장실사(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)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
-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

#### < Stand-up 맞춤형 지원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>

| 평가항목 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배점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시급성 | -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      |
| 신청내용의 적절성       | - 신청목적의 명확성, 신청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    |
| 신청기업의 의지        | -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|
| 신청예산의 적정성       | -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|
| (가점) 지역 내 파급성   | - 해당 밀집지역 내 파급성(회복 잠재력) 인정 기업 대상 가점 부여<br>- 인정 기준 : 최근 2개 분기 매출 발생 여부,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미해당, 종사자 10인 이상, 지역 내 매입 거래처 5개 이상인 기업(증빙자료 필수 제출) | 5<br>(가점) |

- (지원기업 선정)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, 신청내용의 및 신청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
  -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
- (선정결과 통보)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, 선정된 기업에 수행기관 매칭,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관련사항을 안내

## 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6. 7. 31.(금요일) ~ 하반기 지원예산 소진시까지
- (신청방법) 경남테크노파크 온라인 접수 시스템 활용\*
  - 경남TP 홈페이지(<http://www.gntp.or.kr>) > 지원사업 > 지원사업신청
  - 접수 신청 전 경남TP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
  -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부하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를 당부드리며, 기한 내 미접수 시 귀책 사유는 지원기업에 있음
  - \* 이메일, 오프라인 제출 시 평가 제외될 수 있음
  - \*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
  - \* 요청서류 제출 거부, 고의 누락 시 선정 제외
  - \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(제출서류)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하여 리스트 작성
  - 원본 또는 원본 스캔 서류를 온라인(접수 시 첨부 문서로 등록) 제출

| 구분       | 번호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식  | 비고 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공통<br>필수 | 1  | Stand-up 맞춤형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         | PDF | 붙임1 |
|          | 2  | Stand-up 맞춤형 지원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         | PDF | 붙임2 |
| 기타       | 3  | 그 외 기업역량자료(보유 인증, 특허, 수상 등)           | PDF | 해당시 |
|          | 4  | 가점자료(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) | PDF | 해당시 |

## 6. 기타사항

- (성과 및 만족도조사) 지원종료 후 성과\*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

\*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, 고용,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

## 7. 문의처

- 경남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(경남테크노파크)

| 담당자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임수라 전임연구원 | 055-259-3324 | sura95@gntp.or.kr  |
| 조슬희 연구원   | 055-259-3327 | jsh9455@gntp.or.kr |

**별첨. 2026년 하반기 Stand-up 맞춤형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**

※ 귀사가 해당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한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은 담당자께서는  
위기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연번 | 시군구 | 밀집지역 유형 | 밀집지역명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거창군 | 산업단지    | 거창당산농공단지     |
| 2  | 거창군 | 산업단지    | 거창석강제2농공단지   |
| 3  | 거창군 | 산업단지    |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 |
| 4  | 거창군 | 산업단지    | 거창남산농공단지     |
| 5  | 거창군 | 산업단지    | 거창정장농공단지     |
| 6  | 고성군 | 산업단지    | 고성세송농공단지     |
| 7  | 고성군 | 산업단지    | 고성회화농공단지     |
| 8  | 김해시 | 산업단지    | 김해안하농공단지     |
| 9  | 김해시 | 산업단지    | 김해진영주호일반산업단지 |
| 10 | 김해시 | 산업단지    | 김해나전2일반산업단지  |
| 11 | 김해시 | 산업단지    | 김해나전농공단지     |
| 12 | 김해시 | 산업단지    | 김해내삼농공단지     |
| 13 | 김해시 | 산업단지    | 김해병동농공단지     |
| 14 | 김해시 | 산업단지    | 김해진영농공단지     |
| 15 | 남해군 | 산업단지    | 남해고현농공단지     |
| 16 | 밀양시 | 산업단지    | 밀양춘화농공단지     |
| 17 | 사천시 | 산업단지    | 사천두량전문농공단지   |
| 18 | 사천시 | 산업단지    | 향촌삼재농공단지     |
| 19 | 사천시 | 산업단지    | 사천송포농공단지     |
| 20 | 산청군 | 산업단지    | 산청매촌일반산업단지   |
| 21 | 양산시 | 산업단지    | 양산유산일반산업단지   |
| 22 | 의령군 | 산업단지    | 의령부림농공단지     |

| 연번 | 시군구     | 밀집지역 유형 | 밀집지역명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23 | 의령군     | 산업단지    | 의령동동농공단지     |
| 24 | 진주시     | 지식산업센터  | 진주지식산업센터     |
| 25 | 진주시     | 산업단지    | 진주대곡농공단지     |
| 26 | 진주시     | 산업단지    | 진주이반성농공단지    |
| 27 | 창녕군     | 산업단지    | 창녕송진농공단지     |
| 28 | 창원시 성산구 | 산업단지    | 상복일반산업단지     |
| 29 | 창원시 성산구 | 지식산업센터  | SK테크노파크      |
| 30 | 창원시 성산구 | 지식산업센터  | 제4지식산업센터     |
| 31 | 창원시 성산구 | 산업단지    | 창원국가산업단지     |
| 32 | 창원시 성산구 | 지식산업센터  | 창원지식산업센터     |
| 33 | 창원시 성산구 | 지식산업센터  | 코리아지식산업센터    |
| 34 | 창원시 의창구 | 지식산업센터  | 제2지식산업센터     |
| 35 | 창원시 의창구 | 지식산업센터  | 제5지식산업센터     |
| 36 | 창원시 의창구 | 지식산업센터  | 차룡지식산업센터     |
| 37 | 하동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하동적량농공단지     |
| 38 | 하동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하동진교농공단지     |
| 39 | 함안군     | 산업단지    | 군북월촌일반산업단지   |
| 40 | 함안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함안파수농공단지     |
| 41 | 함안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함안황사농공단지     |
| 42 | 함안군     | 산업단지    | 칠북가연일반산업단지   |
| 43 | 함안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함안군북농공단지     |
| 44 | 함안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함안대산대사일반산업단지 |
| 45 | 함안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함안칠원운서농공단지   |
| 46 | 함양군     | 산업단지    | 함양안의농공단지     |



**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**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| 부당개입 주요유형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 |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    |
|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| 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           |
| ③ 허위 대출 약속    |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        |
| ④ 정부기관 등 사칭   |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|
| ⑤ 부정청탁        | 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|
| ⑥ 계약불이행       |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|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**<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>**

- (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) <https://ols.semas.or.kr>
- (콜센터) 1533-0100
- (현장접수)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